

# 협력사 행동강령

2026. 05. 21. 제정

## 서 문

OCI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짐을 인지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협력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공적인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자 「OCI 홀딩스 협력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강령의 목적은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임직원이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RBA)의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어 수립되었으며,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나아가 자신들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도 본 행동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는 향후 단계적으로 협력사를 선별하여 본 행동강령의 적용을 검토하고, 이들 협력사로 하여금 본 행동강령을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준수하도록 권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행동강령의 준수를 서약하는 ‘OCI 홀딩스 협력사 행동강령 준수 동의서’(별표1)를 수취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에 따라 본 행동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제1장 노동인권

### 제1조 (자발적 취업)

협력사는 강제노동, 착취노동 인신매매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제2조 (아동 근로 금지)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만 15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규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해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제3조 (근로시간)

협력사는 사내·외 비상 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현지 법규에 의해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휴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4조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 임금, 초과 근무시간 보상,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5조 (근로자 인권)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육체적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제6조 (차별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조합원신분, 결혼여부 등으로 인해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 등에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7조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혹은 비슷한 조직)에 가입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2장 안전보건

### 제8조 (산업안전)

협력사는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 파악,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선대책은 정비 등을 통한 설비 개선, 지속적인 안전 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을 의미합니다.

### 제9조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신체적 이상에 대해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제10조 (산업위생)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고온 등 유해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개선,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상기 유해요인들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11조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12조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3장 환 경

### 제13조 (환경 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14조 (오염방지 및 자원절감)

협력사는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연료 대체, 연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오염원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오염원 및 폐기물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물, 화석연료, 광물 등 천연자원을 아껴서 사용하고 사용 효율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15조 (유해화학물질)

협력사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또는 근로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에서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며,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1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력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17조 (물질 규제)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18조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 및 배출을 기록, 파악 및 모니터링하고 오염을 통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처리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협력사는 폐수 처리 및 밀폐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19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20조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 파괴 예방)

협력사는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산림 파괴를 예방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 훼손 및 산림 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4장 윤 리

#### 제21조 (사업 청렴성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사업 및 거래 관계에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 등 어떠한 형태의 부패 행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22조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23조 (정보공개)

협력사는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사업 활동,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 제24조 (지식재산권)

협력사, 회사,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 제25조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공정 거래를 위한 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일체의 반 경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26조 (광물 조달)**

협력사는 심각한 인권침해, 분쟁, 환경파괴로 인해 국제사회가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및 금) 및 불법적으로 벌목된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제27조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5장 관리시스템**

#### **제28조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협력사는 조직도, 업무 분장표 또는 이와 유사한 사내 규정에 경영 시스템을 총괄하는 고위 경영진 및 대표를 명시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제29조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30조 (시정조치)**

협력사는 내부 또는 외부평가, 점검, 조사에 의해 확인된 관리시스템의 부적합 사항 및 실행상의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31조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강령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접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보복금지 등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제32조 (공급업체 책임)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의 요구 사항을 자신과 거래하는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별표1) OCI 홀딩스 협력사 행동강령 준수 동의서

OCI 홀딩스 협력사 행동강령 준수 동의서

당사는 「OCI 홀딩스 협력사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관리시스템 등 본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도 준수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2. 당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OCI 홀딩스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경우, 당사의 영업 활동,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 관계의 단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관리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윤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OCI 홀딩스 주식회사 귀중